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2. 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년 1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18년 2월 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유상한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지원결정,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급방법 등 재난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2018.1.18. 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재난이란 매우 광범위 하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 함으로써 재난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시설 복구를 위해 위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더불어 우리 마포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6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되는 등 역대 최고의 점수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당당히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한 만큼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